

「 빌리브 리버런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22-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 최고 29층 / 4개동 총 3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개요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면적기준)	공급 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세대수	배정세대수 (예비)	입주 예정시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78	78,3367	22,8124	101,1491	48,3106	144,1897	24,8608	101	10(30)	'25년 11월 (예정)
	84A	84,7713	23,3535	108,1248	52,2791	154,7009	26,9029	156	16(48)	
	84B	84,6505	23,2623	107,9128	52,2045	154,4225	26,8645	54	5(15)	
		합 계						311	31(93)	

※ 상기 공급내역은 향후,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관별 세대수 배정내역

(단위 : 세대)

구분	78		84A		84B		합 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2	(6)	3	(9)	1	(3)	6	(18)
	장기복무 제대군인		2	(6)	3	(9)	1	(3)	6	(1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6)	3	(9)	1	(3)	6	(18)
	장애인	울산	1	(3)	1	(3)	1	(3)		
		부산	1	(3)	1	(3)	0	0	6	(18)
		경남	0	(0)	1	(3)	0	0		
	중소기업 근로자		2	(6)	4	(12)	1	(3)	7	(21)
	합 계		10	(30)	16	(48)	5	(15)	31	(93)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3. 과거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

※ 청약제한사항 확인 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4㎡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III.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분양일정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주택공급신청지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추가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지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지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제3자(대리인)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구비서류		비고	
위임장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차)		
주택공급신청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발급기준: 본인 발급용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명 또는 날인		

V. 위치 안내

[건본주택]	[사업지]	문의
		<p>[대표전화] 052-258-1000</p> <p>[홈페이지] https://riverent.villiv.co.kr/</p>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25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22-4	